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8가단52728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황건수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박동수

변 론 종 결 2021. 2. 18.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1. D과 피고 B 사이에 2014. 3. 31. 20,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과 2014. 5. 9. 25,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주위적으로, D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3. 12. 24.자 900만 원, 2013. 12. 31.자 3,200만 원, 2014. 3. 31.자 2,000만 원, 2014. 5. 9.자 2,500만 원, 2014. 5. 20.자 500만 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91,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4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D과 피고 B 사이에 2013. 12. 24.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관하여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E은행에게 피고 B 명의의 위 계좌에 관한 각 예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에 D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1) .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이하 편의상 파산선고 전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과 원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통칭한다)가 선임되었다.
- 2) 피고 B은 D의 처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자 D의 장모이다.

나. D에 대한 원고의 대출 및 관련 대여금 판결의 확정

- 1) 원고는 2007. 5. 28.부터 2011. 6. 1.까지 D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2,000만 원[① 2007. 5. 28.자 대출 : 대출금액 1억 원, 대출기한 2008. 5. 28.(대출기한2009. 5. 28.까지로 연장), 이자율 : 연 11%, 연체이율 연 25%, ② 2010. 7. 7.자 대출 : 대출금액 1억 원, 대출기한 2011. 7. 7.(대출기한 2012. 7. 7.까지로 연장), 이자율 연 9%, 연체이율 연 22%, ③ 2011. 6. 1.자 대출 :

대출금액 2억 2천만 원, 대출기한 2012. 6. 1., 이자율 연 9%, 연체이율 22%)]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2) D이 이 사건 대출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1519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23. D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492,558,8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14. 확정되었다.

다. D의 피고 B 명의 계좌로의 금원 이체

1) D은 D 명의의 E 주식회사(이하 ‘E은행’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② 생략)에서 2013. 12. 24. 처인 피고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①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번호 ① 생략) 계좌’라 한다)로 600만 원, 300만 원을 합한 9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제1 이체’라 한다)하였다.

2) D은 2013. 12. 31. 이 사건 (계좌번호 ① 생략) 계좌로 5,500만 원, 300만 원을 합한 5,8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제2 이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그 중 2,6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D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받았다.

3) D은 2014. 3. 31. 이 사건 (계좌번호 ① 생략) 계좌로 총 2,0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제3 이체’라 한다)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2,00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③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번호 ③ 생략) 계좌’라 한다)로 다시 이체한 후 위 2,0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④ 생략)로 이체하였다.

4) D은 2014. 5. 7. 이 사건 (계좌번호 ① 생략) 계좌에 3,0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제4 이체’라 하고, 위 각 이체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체’라 한다)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번호 ③ 생략) 계좌로 이체한 후 2014. 5. 9.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4. 5. 20. 이 사건 (계좌번호 ③ 생략) 계좌에 있던 6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번호 ① 생략) 계좌로 다시 이체한 후 그 중 500만 원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D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이체를 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이체로 지급받은 금원 중 총 9,100만 원[= 제1 이체금 900만 원 + 제2 이체금 중 3,200만 원(= 5,800만 원 - 2,600만 원) + 제3 이체금 2,000만 원 + 제4 이체금 3,000만 원(= 피고 C에게 최종 송금된 2,500만 원 + 피고 B의 카드사용액 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D의 이 사건 각 이체 중 피고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위 돈은 D이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체 중 피고 B의 위 사용액에 해당하는 돈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B은 위 9,100만 원을, 전득자인 피고 C은 위 돈 중 4,500만 원을 피고 B과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계좌번호 ① 생략) 계좌는 실질적으로 D의 계좌로서 D과 피고 B 사이에서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B이 형식적으로 예금주로 개설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E은행에게 이 사건 (계좌번호 ① 생략) 계좌에 관한 각 예금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이체 행위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먼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D의 채무초과상태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용인시 수지구청 및 F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사건 각 이체 당시 D은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있어,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57 판결 참조). 한편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 ② 각 이체금 및 이 사건 제4 이체금 중 500만 원 사용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이체금에 관하여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2. 24. D 명의 E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제1 이체금 900만 원이 피고 B에게 지급된 이후 같은 날 이 사건 (계좌번호 ① 생략) 계좌에서 현금 200만 원이 출금되고, G 및 H 대금 약 300만 원이 결제된 사실, 2013. 12. 26.부터 2014. 1. 10.까지 위 계좌에서 I에게 약 144만 원, J에게 9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B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1억 원을 대여하고 D 명의의 위 계좌로 변제받은 돈을 D가 피고 B에게 송금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900만 원이 D의 책임재산이 아니고 위 돈을 부부 공동생활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이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룬다.

(3) 살피건대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계약일자 2013. 4. 17., 차용금액 1억 원, 상환일자 2015. 1. 31., 채무자 : K(대표이사 : L), 채권자 : B으로 기재된 K 명의의 차용증(현금보관증)과 영수증이 각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제1 이체 이전에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K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2년 과세관청에 3억 원을 상회하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 2017년도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B이 위 차용증 작성 당시 K에게 1억 원을 대여할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실질적인 소득 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K에게 실제 1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대표이사 L은 K의 2020. 6. 20.자 임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D 및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이 제품강의로 인한 교육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소명한 점, ③ 이 사건 제1 이체 이전에 D이 K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피고 B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D은 위 돈을 모두 타행이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④ D의 위 E은행 계좌 잔고는 2013. 12. 23. 기준 7,827원이었는데, 2013. 12. 24. 'M 대출' 항목으로 9,986,648원이 입금되어 총 잔액이 9,994,475원이 된 상태에서 같은 날 위 잔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이체금이 피고 B에게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이체금 900만 원은 D의 책임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D과 피고 B은 부부로서 이 사건 각 이체 당시 동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① 이 사건 제1 이체금 중 약 300만 원이 E 및 H 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의하면, 그 사용내역이 마트나 주유소 등 생활비 지출 항목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위 카드 대금 이외에도 이 사건 제1 이체금의 상당 부분이 통신비, 보험료, 국민연금 및 구체적인 지급처는 불분명하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곳 등에 지출된 점, ③ 이 사건 제1 이체 이후인 2013. 12. 27. LH 세종시로부터 이 사건 (계좌번호 ① 생략) 계좌로 2,486,055원이 입금되었는데, I, J에게 지급된 각 돈의 지급시기로 보아 위 I, J에게 지급된 돈이 이 사건 제1 이체금에서 지급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④ 그 이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송금액은 최대 4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이체금 중 현금으로

인출된 200만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이체금이 전체적으로 D의 생활비나 부양의무 이행의사에 따라 D과 피고 B의 공동생활비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 이체금 900만 원이 피고 B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2 이체금 중 3,200만 원에 관하여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이체금 5,800만 원 중 2014. 1. 17. N에게 3,600만 원, 2014. 1. 29. O에게 500만 원이 각 송금되고, 2014. 1. 20. 총 600만 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 2014. 1. 21. 및 2014. 1. 24. E카드 및 H 대금으로 약 400만 원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에게 송금된 3,600만 원은 D이 2014. 1. 16. P에게 3,6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여금을 N 계좌로 송금한 것인 점, ② O에게 송금된 500만 원은 D이 운영하던 Q 주식회사의 사업상 거래 관계에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2 이체금에서 지출된 위 E 및 H의 신용카드 대금 약 400만 원의 사용 또한 이 사건 제1 이체금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D과 피고 B의 공동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 B의 순수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제2 이체금 5,800만 원 중 피고 B이 2014. 1. 10.부터 2015. 4. 22.까지 D에게 재입금해 준 2,600만 원을 제외한 3,200만 원이 피고 B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N, O에게 송금된 총 4,100만 원(= 3,600만 원 + 500만 원)과 카드 대금 400만 원을 합한 4,500만 원이 원고 주장의 증여금인 위 3,2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⑤ 이 사건 제2 이체금 5,800만 원에서 위 4,500만 원을 제외하면 1,300만 원이 남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위 1,300만 원을 넘는 2,600만 원을 D에게 재입금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이체금 중 3,200만 원은 D과 제3자 사이의 대여 관계 등 거래 관계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거나 피고 B과 D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돈을 피고 B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관하여 D과 피고 B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4 이체금 중 500만 원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제4 이체일 이후인 2014. 5. 21. G에 5,231,22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G의 사용내역이 D과의 공동 생활비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 B이 생활비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위 5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금액이 피고 B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제3 이체금 및 이 사건 제4 이체금 중 2,500만 원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제3 이체금 2,000만 원 및 이 사건 제4 이체금 중 2,500만 원을 피고 C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D이 2014. 2. 25.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에 대여하기 위하여 장모인 피고 C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변제할 용도로 이 사건 제3 이체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제4 이체금 중 2,500만 원은 D과 피고 B이 피고 C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임차한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 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피고 C으로부터 빌렸다가 위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 B이 위 각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3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R 대표이사 S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5. 8. 위 금액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및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으나, 당초 D이 2014. 2. 25.경 피고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R에게 대여해 주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 C은 1993. 9. 9.경 성남시 분당구 T 아파트 U호(이하 '성남시 아파트'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고, 남편인 V과 거주하던 중 V이 사망하자 2012. 12. 3. 성남시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피고들은 D과 피고 B이 피고 C과 함께 성남시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용인시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이 2006. 3. 13. 성남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과 피고 C이 2012. 12. 17. 용인시 수지구 W 아파트 X호(이하 '용인시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용인시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피고 C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 C만이 2013. 2.

18. 용인시 아파트에 홀로 전입신고를 마쳤을 뿐 피고 B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4. 4. 21. 성남시 아파트에서 용인시 아파트가 아닌 김포시 Y 소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 C과 함께 거주할 용인시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이 사건 각 이체 행위 당시 부동산이나 재건축사업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인데,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4,500만 원을 피고 C의 예금계좌에 예치 내지 입금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 이체금 2,000만 원 및 이 사건 제4 이체금 중 2,500만 원은 D이 피고 B에게 종국적으로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제3 이체 금 2,000만 원과 제4 이체금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각 체결한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인 D은 위 각 증여 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B과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라. 피고 C의 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

- 1) 피고 C은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C이 피고 B의 친모이자 D의 장모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와 D이 피고 C와 상당 기간 성남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해 왔고, 피고 C이 D에게 대여금 내지 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 B에게 비밀로 하고 D에게 추가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돈 중 일부를 피고 C에 대한 종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받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 C이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D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3 이체금 2,000만 원 및 이 사건 제4 이체금 중 2,500만 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 한편 수익자와 전득자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수익자와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증여액 상당액인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2, 13, 1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좌번호 ① 생략) 계좌에 2013. 3. 15. 및 2013. 3. 28. Z 명의로 입금된 총 15억 2,000만 원은 피고 B이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AA 토지를 2013. 3. 15. Z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도금액이고, 피고 B이 AB와 공유하고 있던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AC 건물과 관련된 입금내역도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번호 ①

생략) 계좌에 피고 B와 관련된 거래내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번호 ① 생략) 계좌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양지

1) 원고는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금전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를 증여(주위적)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예비적)으로 달리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